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임용권자는 장학금을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.

제10조 제1항중 "도지사는 도에"를 "임용권자는 소속기관에"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1995. 1. 1부터 시행한다.